

춘천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352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35268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8. 18 선고 2019가단5823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수

피고, 피항소인 B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길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별님

변론종결 2022. 9. 22.

판결선고 2022. 10. 20.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8. 18. 선고 2019가단5823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전 3,154㎡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5. 3. 24. 접수 제89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흥호, 판사 여현주, 판사 장두봉